

점용료·사용료 납입고지서(부분)

제호	년도 세입	납
장		
관		
항		
목		
주관		취급

일금

위 년 월 일까지
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(공유수면관리청)
세입징수관 인

이 고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이 별지에서 “공유수면관리청”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

점용료·사용료 납입고지서

제호	년도 세입	납
장		
관		
항		
목		
주관		취급

일금

위 년 월 일까지
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(공유수면관리청)
세입징수관 인

※ 이 별지에서 “공유수면관리청”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

통지서

제호	년도 세입	납
장		
관		
항		
목		

일금

위와 같이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(공유수면관리청)
세입징수관 인

※ 이 별지에서 “공유수면관리청”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

영수증서

제호	년도 세입	납
장		
관		
항		
목		

세입징수관
계좌

일금

위와 같이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은행